

마텔리 맥케그

법률사무소

계약 조건("조건")

마텔리 맥케그는 귀 의뢰인을 대리하도록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서비스 제공 및 업무대행을 기대합니다.

이 조건은 본 사무소 업무 전반에 적용하나 서면으로 달리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지시하게 됩니다.

1. 서비스

1.1 본 사무소가 제공하는 특정 법률서비스는 위임계약서에서 개략한 바와 같습니다.

1.2 일관성 있고 즉각적인 서비스 전달을 약속하며 이는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 | | |
|--------------------|----------------|
| 1) 파트너 변호사 접촉기회 이용 | 2) 즉각적 대응 |
| 3) 의뢰인 목적달성 지원 | 4) 의뢰인 업무이해 |
| 5) 원활한 의사소통 | 6) 탁월한 법률기량 보유 |
| 7) 실질적 상업적조언 제공 | |

1.3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 |
|----------------|--------------|
| 1) 명확한 업무지시 제공 | 2) 즉각적 정보제공 |
| 3) 시간상 제약 논의 | 4) 불확실한 사항질문 |
| 5) 기대불만족 표현 | |

1.4 본 사무소는:

- | | |
|---------------------------------------|--------------------------|
| 1) 위임계약서에 사건착수지시를 확인합니다. | 2) 업무담당자 성명 및 직책을 안내합니다. |
| 3) 의뢰인 권리 세부사항을 명시한 의뢰인 정보안내서를 제공합니다. | |

1.5 부동산 양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재산이나 사업평가를 하지않으며, 재산 및 사업관련 조언을 하더라도 의뢰인 요구나 투자 프로파일 만족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관련 등록된 부동산 감정인, 금융상담자와/나 회계사등 적절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1.6 본 사무소는 은행예금외에 금융상품 관련 투자상담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이 있는 금융상담자나 회계사로 부터 적합한 조언을 받을 것을 다시한번 권유합니다.

2. 재정사항

2.1 수수료

2.1.1 청구수수료나 그 산정방법은 위임계약서가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법률협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계산한 것으로, 본 사무소는 다음사항을 감안할 권한이 있습니다:

- | | |
|------------------|--------------------------|
| 1) 소요시간 | 2) 필요 능력 전문지식 및 책임 |
| 3) 관련 부동산 감정가 | 4) 사안의 복잡성 독특성 중요성 및 긴급성 |
| 5) 법률업무 운영상 적정비용 | 6) 결과 |

이러한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특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2.1.2 본 사무소 위임계약서가 예상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시간내에 조언을 드립니다. 서면상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경우, 예상수수료 및 비용은 견적금액이 아니며 수수료 및 비용은 그 예상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3 위임계약서가 고정수수료를 명시한 경우, 본 사무소는 동의한 범위내 서비스에 대해 이를 청구합니다. 동의한 범위의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시간내에 조언을 드리며, 의뢰인 요청이 있으면 추가 수수료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2.1.4 위임계약서에 수수료가 시간당 기준으로만 산정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은 위임계약서가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청구료 차이는 본 사무소 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합니다. 소요시간은 6분 단위로 기록하며 초과시간은 다음 6분 단위에 올림합니다.

2.2 지불금 및 비용 : 의뢰인 서비스 제공에 토지등록세, 감정비, 법원신청비등과 같은 지불금이나 제 3 자 지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 본 사무소로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지불하며, 이는 청구서에 자세히 명시됩니다.

2.3 외부 컨설턴트 서비스 : 법정변호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문가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른 컨설턴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무소는 해당 컨설턴트 계약조건을 의뢰인과 논의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지시 전에 컨설턴트 수수료 지급을 요청합니다.

2.4 GST (있는 경우) : 본 사무소 수수료 및 비용에서 지급합니다.

2.5 청구서 : 진행중인 사건은 중간청구서를 (보통 매달) 보내며, 사건완료나 계약종료시 최종청구서를 보냅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중요 제 3 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청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 단시간내에 처리완료되는 경우 처리완료전이나 완료시점에 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

2.6 지급 : 일반적으로 대금결산시 지급을 요구하는 부동산관련 거래가 아닌경우, 청구일자로 부터 14 일내에 전체지급을 요구합니다. 7 일 이상 연체금액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자는 연 15% 로 산정합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이 비용은 지급 금액에 추가됩니다. 본 사무소는 제공한 청구서상 관련수수료, 비용 및 지불금을 신탁계정 잔고자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정은 어떤 경우든 공제(상쇄 청구 포함)나 상쇄하지 않고 지불해야합니다.

2.7 보증담보 : 신탁계정에 일정 담보액을 지급하거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건에 동의하면 수수료나 기타 비용 만기시, 본 사무소가 해당 금액을 은행에서 찾을 권한을 갖게되며, 이는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2.8 제 3 당사자 : 법원이나 재판소가 의뢰인에게 다른 당사자 비용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지급은 추가로 하며, 본 사무소에 대한 비용지급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비용을 제 3 자가 배상하는 경우 (예; 임대차계약 준비비용), 제 3 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그 책임을 지게됩니다.

2.9 신탁계정 :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 부터 또는 대신하여 수취한 일체기금을 신탁계정에 보유합니다 (청구서지급 수취금액은 제외). 주요기금을 보유하는 경우 보통 은행이자부예금에 이를 예치하며, 파생이자의 5%는 관리비로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IRD 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사무소가 거주자 원천징수세를 정확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의뢰인 만족도

의뢰인의 만족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본 사무소는 불만처리 관리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뢰인 정보안내서*를 참고합니다.

4. 계약종료

의뢰인은 합리적인 서면통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종료할 수 있으며, 본 사무소는 의뢰인 지시가 없는 경우나 만기 수수료 및 비용 미지급의 경우 수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은 종료일까지의 수수료 및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 파일 및 문서보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관하는 문서원본은 본 사무소 증서실에 보관하나, 종결파일은 문서저장관리 회사로 보내져 문서로 (또는 전자복사본) 7 년간 보관 후 소멸됩니다. 의뢰인은 사건종결시 파일을 회수할 수 있으나, 본 사무소는 수수료나 비용의 미지급시 파일 및 증서를 보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6. 본 조건 동의

이 조건은 현계약 및 추가본을 보내는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본 사무소는 때때로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최신조건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이 본 조건에 따라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나, 서면으로 달리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본 조건과 영문본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영문본을 적용합니다.

7. 계약 조항

본 사무소에 대한 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계약 법 2010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약, 불법행위, 평등법 등 기타 어떤 것이든, 위임계약 이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청구에 근거한 조항 또는 누락이 발생한 이후 12 개월 이내에 배상 청구가 접수되도록 해당 법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11(2). 11(3). 14, 32(2) 항에 있는 “뒤늦게 안 사실”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개월의 기간은 손실 또는 손해가 분명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또는 그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것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8. Meritas – 국제 유대

마텔리 맥케그는 Meritas 회원이며, 이는 200 여 독립상무 법률사무소의 네트워크로 전세계의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은 업무나 수수료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이 멤버십은 본 사무소와 의뢰인에게 타 사법권의 우수한 법률자원 및 전문분야에 주요접근권을 부여하여 의뢰인 요구를 사실상 어디에서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동의하의 타회원 사무소 공조 및 서비스이용에 국한되더라도 Meritas 와 그 가능성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www.meritas.org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